

강원 지역 자치경찰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 지역의 자치경찰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

본 협약은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」와 「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」가 강원지역의 자치경찰제도 정착, 성공적 운영 및 자치경찰 발전 등을 위하여 홍보, 연구 및 기타 공동 사업 진행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협력사항

협약기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강원 지역 내 자치경찰제도 도입·정착
2. 자치경찰 관련 교육·홍보
3.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
4. 재난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상호 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
5. 기타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

제3조 주관부서

협약기관의 본 협약의 이행을 담당할 부서로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를 각각 지정한다.

제4조 정보교환

협약기관 및 주관부서는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하고 협력한다.

제5조 비밀유지

협약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 효력 및 유효기간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기타사항

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위와 같이 업무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2월 12일



총 장
박 덕 영

(Handwritten signature of Park Deung-yeong)



위 원 장
조 명 수

(Handwritten signature of Jo Myeong-su)

